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5
----------	-----

제출년월일 : 2017.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 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를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 사항을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2017-1004호(2017.8.17~8.26) 결과, 의견1건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가능한 심의사항 확대” 부분에 대하여 상위법
저촉우려 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반영하여 삭제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감사실-9744(2017.08.16.)]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10347(2017.08.29.)]
-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주민생활지원과-47342(2017.08.10.)]
- 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2
- 6) 평창군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2017.09.06.)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절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0조의2(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u> <u>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시설</u> <u>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u>

관계법령 발췌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2015.2.16., 2015.7.20., 2016.7.12.>

(1. ~ 27. 생략)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29. ~ 33. 생략)

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수익매각) ⑥ 기타 수익에 의한 매각은 영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거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수익매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정균
연락처	(033) 330 - 2270